

1 생활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생활관의 명칭은 호서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생활관은 향학열이 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학생을 선발하여 인격 도야와 면학에 정진케 함으로써 본 대학 학풍조성의 핵심을 이루게 하고, 나아가 기독교 정신과 벤처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 국가발전에 기여케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기(학사일정에 따름) 단위로 한다.(개정 2017. 3. 1.)

제4조 (이용제한) 방학 중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5조 (관생규칙) 관장은 관내의 질서유지와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생규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 (조직) 생활관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1. 관 장 : 1인
2. 부관장 : 1인
3. 사 감 : 약간명
4. 직 원 : 약간명
5. 용 원 : 약간명

제7조 (관장) ① 관장은 본 대학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보한다.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③ 관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관장은 생활관 당해 연도의 사업보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학기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한다.

⑤ 항 삭제 (2006. 3. 1)

⑥ 관장은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력이 있는 관생중 책임자를 관생장 및 부관생장으로 임명하고, 자율적 학습 능력의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제8조 (사감) ① 사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보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조사감을 둘 수 있다.

② 사감은 관장을 보좌하며 관생 및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9조 (직원) 사무직원 및 용원의 업무 분장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 (구성)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 (조직)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위원장 : 생활관장

위 원 : 부관장, 사감, 사생단 약간 명

제1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규정에 관한 사항
4. 관생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5.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제13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입관 및 퇴관

제14조 (입관) 입관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입관원서를 생활관에 접수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선발기준) 관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향학열과 의지가 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생활관의 제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학생
3. 건강상태가 양호한 학생

제16조 (입관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생활관에서 퇴관처분을 받은 학생
3. 전염병 질환자
4. 휴학자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제17조 (퇴관처분) 관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성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학생
2. 관생규칙에 따라 퇴관대상이 된 학생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학생

제 5 장 재 정

제18조 (납부금) 관생은 생활관 유지를 위하여 소정의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1항 (회계) 생활관 회계는 1년 단위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19조 (학교보조금) 학교는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장려금) 관장은 매 학기말 성적평가에 따라 성적이 크게 향상된 관생에게는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개 정

제21조 (개정) 본 규정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12. 10. 23>

제23조 (문서 폐기) 문서 폐기는 생활관장 전결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